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선순위자 중 1명만 동의해도 장기등 기증 가능〉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38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선순위자 중 1명만 동의해도 장기등 기증 가능 ..... | 3 |



## I. 개요

### 1.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638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18
- (3) 회 부 일 : 2024. 12. 19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현재 장기기증 대리동의권자의 순위는 가족 또는 유족 중 법률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결정됨. 대리동의권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촌수, 연장자순으로 결정함.

이제 우리나라는 저출산·핵가족화로 인구구조가 변경되어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세대 구성도 단순함. 과거처럼 연장자 여부가 장기등기증자·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과 편리한 대리동의 취득으로 장기기증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임(안 제12조제3항).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선순위자 중 1명만 동의해도 장기등 기증 가능

#### 가. 개정안의 내용

- 현행법은 뇌사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sup>1)</sup> 기증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가족·유족의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동의해야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나,
- 개정안은 ‘선순위자 중 어느 1명’만 동의해도 장기등의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br>· ② (생략)<br>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명으로 한다. | 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br>· ② (현행과 같음)<br>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선순위자 중 어느 1명만 동의하면 된다. |

1)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4조제1호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팔 또는 발·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뇌사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 기증을 동의하기 위한 가족·유족 선순위자 1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정해짐<sup>2)</sup>.

- 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친족

\* 동일한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촌수 → 연장자 순으로 선순위자 확정

\* 행방불명, 해외체류 등으로 인한 연락의 어려움, 정신질환·지적장애·고령 등 건강 상의 사유로 인한 정상적인 의사표시 불가로 선순위자가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가능

□ 따라서 촌수·연장자 순으로 확정된 1명의 선순위자가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머지의 동일한 선순위자 중에 동의하는 가족·유족이 있더라도 장기등을 기증할 수 없으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 및 가족·유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 본인의 동의: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한 동의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한다)에 따른 1명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선순위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등의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2.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족·유족이 선순위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불편·혼란<sup>3)</sup>을 겪거나 선순위자의 의사확인 지연·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기증 과정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 가족 규모가 줄어들고 세대 구성이 단순해지며<sup>4)</sup> 친족 내 촌수·연장자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점, 장기등 이식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현저하게 적은<sup>5)</sup>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장기등 기증 동의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증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같이 선순위자의 적용이 변경된다면, 아래 표의 기증 중단 사유 중 ‘선순위자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서 장기등 기증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장기등 기증 동의 및 중단 현황(2020~2024년)>

(단위: 명)

| 연도   | 뇌사 추정자<br>통보 | 의학적<br>기증<br>적합<br>(=A+B) | 기증<br>동의<br>(A) | 기증 중단     |          |          |            |                      |    |
|------|--------------|---------------------------|-----------------|-----------|----------|----------|------------|----------------------|----|
|      |              |                           |                 | 소계<br>(B) | 기증<br>거부 | 환자<br>사망 | 선순위자<br>문제 | 진료과·<br>가족 간<br>접촉불가 | 기타 |
| 2020 | 2,175        | 1,746                     | 527             | 1,219     | 931      | 125      | 34         | 121                  | 8  |
| 2021 | 2,141        | 1,732                     | 496             | 1,236     | 859      | 199      | 10         | 159                  | 9  |
| 2022 | 2,163        | 1,791                     | 473             | 1,318     | 1,004    | 177      | 31         | 90                   | 16 |
| 2023 | 2,921        | 2,193                     | 545             | 1,648     | 1,193    | 265      | 48         | 131                  | 11 |
| 2024 | 2,986        | 2,078                     | 457             | 1,621     | 1,007    | 261      | 56         | 277                  | 20 |

\*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예를 들어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선순위자가 없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방계(傍系) 등에서 촌수·연장자를 고려해 선순위자를 판단하여야 함.

\* 방계는 직계가 아닌 혈연관계의 친족으로, 방계의 3촌에는 백부·숙부·고모·외삼촌·이모·조카 등, 4촌에는 큰아버지/숙부/고모/이모의 자녀·종조부모(작은할아버지/할머니)·왕고모(아버지의 고모)·왕이모 등이 포함됨.

4) 2025년 1월 기준 평균 세대원 수는 2.12명임(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5) 2024년 기준 이식대기자는 45,567명, 뇌사 장기기증자는 397명으로 이식대기자 수의 0.87%에 그침.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선순위자일 경우 촌수·연장자를 사유로 다른 선순위자에 우선하지 않게 되므로, 직계비속이라면 자녀와 손자가, 직계존속이라면 부모와 조부모가 최근친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등 기증 동의에 있어 동일한 순위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에 있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sup>6)</sup>, 안 제12조제3항이 개정되는 경우 인체조직 기증에 대해 동의하는 가족·유족의 선순위자 적용도 변경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한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12조제3항의 개정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제3항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선순위자 중 어느 1명만 동의하면 된다”라고 하여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선순위자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에 있어 모두 촌수·연장자순의 우선순위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임.

---

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나. 심장판막·혈관

다.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조(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조직 기증에 관한 동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준용한다.

- 그러나 제12조제1항제2호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본인의 사전 의사표시가 없었을 때) 사망·뇌사 후에 기증에 대해 동의하는 가족·유족의 선순위자’에 관한 규정인 반면, 제12조제2항은 ‘(본인이 사전에 장기등 기증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사망·뇌사 후에 기증에 대해 거부하는 가족·유족의 선순위자’에 관한 규정으로 그 성격이 다름<sup>7)</sup>.
-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증 거부의 선순위자에 있어서도 개정문이 적용될 경우, 동일한 선순위자 중 어느 1명만 거부해도 기증의 거부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등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명확하게 개정문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가족·유족이 선순위자 중 우선 순위자를 입증해오던 불편이 해소되는 점, 핵가족화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 이식대기자에 비해 뇌사 장기기증자가 매우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저출산·핵가족화 등 사회적 변화에 맞도록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 체계를 개선하는 것에 찬성

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등기증자·장기등기증희망자 본인 및 가족·유족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2.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또는 유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행방불명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그 가족 또는 유족의 거부의 의사표시는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이 하여야 한다.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장기이식 절차에서 신속한 선순위자 파악 및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나, 편의성과 장기이식 성공률의 향상만을 고려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현장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선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1명의 동의로도 동의가 가능하되, 선순위자 모두에게 알려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 필요성이 있음<sup>8)</sup>.

---

8) 다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의견은 기존에 선순위자들 중 존수·연장자순에 따른 1명이 동의하면 장기등 기증이 가능하던 것을 '선순위들자 중 모두가 반대의사가 없을 때에만 기증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에 반하여 오히려 동의요건이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